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대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525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8. 10.

발 의 자 : 김대식 · 김선교 · 김태규
김상훈 · 윤한홍 · 윤영석
이달희 · 서천호 · 고동진
서지영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,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와 국민투표사무에 관하여 관계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, 인원·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
한편, 최근 실시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투표가 일시 중단되는 등 선거사무 수행 과정에서 선거관리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체계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의 규정이 선거관리위원회와 행정기관 간 일방적인 지시·협조관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어 선거관리기관과 관계기관 간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행정기관과 선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, 인원·장비의 지원 등이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에 대하여 지시 또는 협조요구 뿐만 아니라 공동 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).

법률 제 호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제1항 중 “指示를 할”을 “지시를 하거나 관계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指示 또는 協助要求를”을 “지시, 협조요구 및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第16條(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 ・ 協助要求) ① 各級選舉管理 委員會는 選舉人名簿의 작성등 選舉事務와 國民投票事務에 관 하여 關係行政機關에 필요한 指示를 할 수 있다. ② 各級選舉管理委員會는 選舉 事務를 위하여 人員・裝備의 지원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行 政機關에 대하여는 指示 또는 協助要求를, 公共團體 및 「은 행법」 제2조에 따른 은행(開 票事務從事員을 委囑하는 경우 에 한한다)에 대하여는 協助要 求를 할 수 있다. ③ (생략)	第16條(選舉事務등에 대한 指示 ・ 協助要求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지시를 하거나 關係행정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・운영할----- ----. ② ----- ----- ----- -----지시, 협조요구 및 공동협력을 위한 필요한 조 치를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